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4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408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495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변론종결 2021. 8. 25.

판결선고 2021. 9. 29.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8. 29.자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계약은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1) 소외 D는 원고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2021. 1. 27.을 기준으로 한 연체금액은 74,207,771원, 2021. 6. 8.을 기준으로 연체금액은 77,427,475원이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8. ‘D는 원고에게 31,547,451원 및 그 중 30,911,675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2220)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5. 12. 5.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1) D의 아버지인 망 E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2018. 8. 29.경 사망하였다. 당시 E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F, D, G이 있었다.

2) E의 상속인들은 2018. 8. 29.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0. 18. 접수 제11797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9.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5.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70,2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하고, 2019.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D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9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김포세무서에 2015. 10. 1. 발생한 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हे 해당하고, D는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는 E과 혼인 후 E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생활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력이 좋지 않은 D의 위 분할협의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4, 5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나.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9. 10. 25. I,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에서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D의 상속지분 2/9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8.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4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위 450,000,000원에서 피고가 말소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0,200,000원을 공제하면 379,800,000원(= 450,000,000원 - 70,200,000원)이 남게 되고, 이 중 D의 상속지분은 84,400,000원(= 379,800,000원 × 상속지분 2/9)이 된다. 한편 원고의 2021. 6. 8.을 기준으로 한 피보전채권액 77,427,475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D의 상속지분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원고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6층 호 101.670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대 47617.7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47617.7 분의 51.9577

